对任对另至吃到这些好好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김대일 의원 외 12명)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4 발의연월일 : 2024. 2. 16.

발 의 자: 김대일 · 김경숙 · 김용현

임병하 • 연규식 • 박규탁

정경민 · 김홍구 · 노성환

도기욱 • 서석영 • 신효광

박창욱 의원 (13명)

1. 제안이유

O 맑은 물은 경북도민 건강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상수도관 교체와 함께 노후된 옥내급수관에 대한 대책마련 또한 필요함

○ 옥내급수관의 세척, 갱생 또는 교체 이외에 수도관 성능 향상장 치를 추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정비의 내용에 상수도 성능 향상 장치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안 제2조제2호)
- 나. 사업의 우선순위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규정 (안 제7조)

- 3. 개정조례안: 붙임
-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5. 관계법령 발췌: 붙임
- 6. 관련부서 협의
 - O 법제심사: 검토완료 §예산입법담당관-40('24. 1. 9.)
 - O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무 없음 §정책기획관-1845('24. 2. 13.)
 - O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없음 §정책기획관-1845('24. 2. 13.)
 - O 해당부서 의견: 의견 없음 §정책기획관-1845('24. 2. 13.)
 - O 비용추계서 첨부: 붙임
- 7. 발의의원 서명부: 붙임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교체를 말한다"를 "교체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교체 등"을 "교체,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설치 등"로 하며, 같은 조 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 자를 말한다.
- 7.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계층을 말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일 순위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소유 주택을 우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쳙 했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정비"라 관 내부의 녹 및 이 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 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 이 있는 노후된 급수관과 저수 조 등을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를 말한다. ---- 교체 또는 교체 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 도관 성능 향상 장치를 말한다.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5. "공사비"란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_____ 공사를 위해 실제 소요되는 비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 설치 등 용을 말한다. 6.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 <신 설> 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7.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 <신 설> 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7조(정비사업 지원) ① ~ ③ 제7조(정비사업 지원)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④ 정비사업 지원 우선순위는④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td>------설>우 기초생

1. · 2. (생략)

⑤ (생략)

④ -----. ----.. <u>다만, 동일 순위일 경</u>

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의 소유 주택을 우선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수도법

제2조(책무) ①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③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5., 2011. 11. 14.>

[본조신설 2021. 6. 15.]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 1. 재정수반요인
 - 제7조(정비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정비사업 대상 세대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옥내수도시설 정비를 위한 세대급수관 공사비 지원금은 세대당 최대 2백만원과 공사비의 100% 중 낮은 금액
 - 2. 옥내수도시설 정비를 위한 공용급수관 공사비 지원금은 세대당 최대 1백만원과 공사비의 100% 중 낮은 금액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용급수관 공사비 산정 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 ☞ 정비사업 지원 예산(금회 일부개정조례안 변동 없음)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제7조(정비사업 지원)에 따른 세대급수관과 공용급수관 정비사업 지원 비용을 추계하기 위해 제5조(정비사업 대상)와 제6조(정비사업 제외 대상)를 적용한 수요조사 실시한 결과('22. 8월 시행) 반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3. 비용추계의 결과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소계(a)	_	_	_	_	_	_
세출	○공용급수관	100	100	100	100	100	500
	ㅇ세대급수관	20	20	20	20	20	100
	소계(b)	120	120	120	120	120	600
총	- 비용(a-b)	△120	△120	△120	△120	△120	△600

(단위: 백만원)

4. 재원조달 방안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일반회계	120	120	120	120	120	600
도비	특별회계						
	기금						
시・군비		280	280	280	280	280	1,400
민간							
기타							
합계		400	400	400	400	400	2,000

5. 부대의견

- 지방상수도를 통해 맑은 물을 공급하여도 옥내수도시설* 노후로 인해 적수(붉은물=녹물), 이물질 등 수질저하 민원이 잦음
- * 옥내수도시설은 건물소유주 등 수용가에서 관리하여야 하나 경제적 사유 등으로 미정비 실정
- 옥내수도시설 관리자의 경제적 부감을 경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 급자,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에 정비사업 우선순위를 주는 일부 조례개정 등 선제적인 대응 요구

6. 작성자

- 환경산림자원국 맑은물정책과 지방시설주사 강명수(054-880-3578)



경 상 북 도



수신 맑은물정책과장 (경유)

제목 비용추계 검토결과 회신

- 1. 맑은물정책과-1818(2024,2.6.)호와 관련입니다.
- 2.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비용추계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결과

조례명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과 관련하여 기존 교체 외 수도관 성능 향상장치 추가와 지원대상의 우선순 위를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 시설 정비 지원 조례 일부	 검토 결과, 5년간을 추계기간으로 전제하여 365세대(공용 급수관 330세대. 세대급수관 35세대) 기준으로 총 사업비 20억원(도비 6억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이라는 담당부서의 추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개정조례안	 다만, 조례의 정비대상 특성 상 매년 일정규모의 재정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예측되고, 사업추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신청자의 급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대상선정 기준 등 사업추진에 대한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 추진 시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예산부서와의 충분한 재정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끝

예 산 담 당 환원